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

1. 귀 기관의 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(수도권: 4단계, 수도권 외 지역: 3단계)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 - 다만, 복잡하게 구분된 사적 모임 제한이나 저위험, 다수 민원 시설 등에 관해서는 높아진 접종상황을 반영하여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등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.
 -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,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,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바랍니다.

<주요 조정사항>

<다중이용시설 등>

다중이용시설	3단계	4단계	비고
식당 · 카페	▲ 24시~익일 05시 운영제한	▲ 종전과 같음	-
실내 · 외 체육시설	▲ 샤워실 운영 · 이용 가능	▲ 종전과 같음	
방문판매를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	▲ 운영제한시간 해제	▲ 운영제한 시간 해제	3~4단계 동일
독서실 · 스터디카페 · 영화관 · 공연장	▲ 종전과 동일	▲ 24시~익일 05시 운영제한	-

결혼식장	▲ 개별 결혼식당 최대 40명+ 4㎡ 당 1명 단, 접종완료자 포함시 최대 250명 가능 * 40명+접종완료자 최대 201명 포함 가능 * 종전과 같이 식사 미제공 시 최대 199명(99명+접종완료자 100명 포함) 가능	▲ 개별 결혼식당 최대 40명+ 4㎡ 당 1명 단, 접종완료자 포함시 최대 250명 가능 * 40명+접종완료자 최대 201명 포함 가능 * 종전과 같이 식사 미제공 시 최대 199명(99명+접종완료자 100명 포함) 가능	-
스포츠(관람) 경기시설	▲ 종전과 동일	▲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각각 수용 인원의 20%(실내시설), 30%(실외시설)	관중 기준
숙박시설	▲ 객실 운영 제한(3단계 3/4, 4단계 2/3운영) 해제		-
종교시설	▲ (미완료자 포함) 전체 수용인원의 20% ▲ (완료자로만 구성) 전체 수용인원의 30%	▲ (미완료자 포함) 전체 수용인원의 20% ▲ (완료자로만 구성) 전체 수용인원의 30%	○ 완료 자 범위 : 정규 종교 활동 진행 · 주관자 및 참석자
사적 모임	▲ 예방접종 완료자는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 가능	▲ 예방접종 완료자는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	-

<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>

■ 3, 4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*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**

*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

*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(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8명, 수도권 외 지역 최대 10명)

** 4단계 지역 독서실 · 스터디카페, 영화관 · 공연장은 각각 24시~익일 05시 운영 제한

가. 적용 기간: 2021. 10. 18.(월) 0시 ~ 2021. 10. 31.(일) 24시

나. 적용 지역 :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 · 도*

*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다. 적용 단계

○ 수도권 : 거리두기 4단계

○ 수도권 외 지역 : 거리두기 3단계

※ 본 조치(단계)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 · 도 및 시 · 군 · 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

※ 수도권 외 지역 중 4단계 적용 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그대로 적용 일자리 혁신과-1203 5-2

※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 · 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

①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(1, 2, 3그룹,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)

○ 대상 시설(35종)

- 1그룹(3종) :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 콜라텍 · 무도장, 홀덤펍 · 홀덤게임장
- 2그룹(5종) : 식당 · 카페, 노래(코인)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(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)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- 3그룹(11종) : 학원 등, 영화관 · 공연장, 독서실 · 스터디카페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실내체육시설(비교적 중저강도 운동), 유원시설, 오락실 · 멀티방, 상점 · 마트 · 백화점(300m² 이상), 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, PC방
- 기타시설(14종) : 스포츠경기(관람)장, 경륜장 · 경정장 · 경마장(각 국공립시설), 박물관 · 미술관 · 과학관, 실외체육시설(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, 숙박시설, 파티룸, 도서관, 키즈카페, 돌잔치, 전시회 · 박람회, 마사지업소 · 안마업소, 국제회의 · 학술행사, 종교시설, 이 · 미용업
- 고위험 사업장(2종) : 콜센터, 물류센터

○ 조치 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1: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

붙임2: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

붙임3: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

② 교통시설

○ 대상 시설 : 대중교통시설(국제항공편 제외)

○ 조치 내용 : 방역지침

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20199(2021.6.28.)에 의한 '전국 대중 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' 계속 적용

③ 국공립시설

○ 소관부처 ·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

※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(이용)특성, 방역관리 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, 국공립시설(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) 탄력적 운영가능

※ 별도 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(카지노, 경륜 · 경마 · 경정 등)은 해당 수칙 적용

④ 모임 · 행사

○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■(3단계) 사적모임 11명(접종완료자 포함) 이상 금지, 그 외 집회시위 등 모임·행사 50명 미만으로 제한

■(4단계) 사적모임 9명(접종완료자 포함) 이상 금지, 그 외 모임행사 금지

→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후 가능

<50명 이상(3단계) 금지(4단계) 대상 모임·행사 예시>

법인·단체·공공기관·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, 설명회, 공청회, 학술행사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, 기념식, 수련회, 사인회, 강연, 대회,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

※ 결혼식, 장례식, 종교시설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공연은 각각 별첨 '기본방역수칙'의 결혼식, 장례식, 종교시설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공연장 수칙과 '추가적용 수칙' 적용

■ (시험 1~4단계) 수험생 간 1.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, 대기자 공간 마련, 시험관계자,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

* 기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

붙임4: 수도권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⑤ 사회복지시설

○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

⑥ 직장근무(유연근무 등 활성화)

○ 3단계: 50명 이상 사업장(제조업 외) 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20% 권고
○ 4단계: (제조업 외) 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30% 권고

⑦ 학교(등교)

○ 3단계/4단계: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

3.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,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,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,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.

4. 각 협단체에서는 동 자료(붙임)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, 이메일, SNS 등을 통하여 신속히 소속 기업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또한,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

부과될 수 있는 만큼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수도권 유통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.
2.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.
3.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.
4.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. 끝 .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

수신자 한국산업단지공단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중소기업중앙회, 전국경제인연합회,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경영자총협회, 한국무역협회, 중견기업연합회, 업종별 협·단체

주무관 유재훈 과장 김재준
전결 2021. 10. 19.

협조자

시행 산업일자리혁신과-1203 (2021. 10. 19.) 접수

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, 산업일자리혁신과 / <http://www.motie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4222 팩스번호 044-203-4722 / jaehun9110@oma.go.kr

문서관리카드 산업일자리혁신과-1203 5 - 5
대국민공개